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알찬의정!

2012년도
의회운영안내



순 창 군 의 회

www.sunchangcouncil.go.kr

제6대 의원 현황





의 장

공 수 현

- 순창군 다
- 구림면 구림로 351
- 전 화063) 652-9300
- 휴대폰 011-671-9301



부의장

정 봉 주

- 순창군 가
- 순창읍 장류로 296 403호(대신파크)
- 전 화063) 653-3817
- 휴대폰 010-2776-6746



의 원
임 예 민
- 순창군 가
- 순창읍 순창6길 19-7
- 전 화063) 653-8585
- 휴대폰 011-622-8585



의 원
한 성 희
- 순창군 나
- 인계면 노동로 157-6
- 전 화063) 653-6555
- 휴대폰 010-4459-4404



의 원
정 성 균
- 순창군 나
- 동계면 동계로 41
- 전 화063) 652-4022
- 휴대폰 011-653-4023



의 원
최 영 일
- 순창군 다
- 쌍치면 순정로 1488
- 전 화063) 652-1420
- 휴대폰 011-472-0657



의 원
신 용 균
- 순창군 다
- 복흥면 추령로 1116
- 전 화063) 652-7473
- 휴대폰 010-6338-7473



의 원
이 기 자
- 비례대표
- 순창읍 순창로 205-1
- 전 화063) 653-0880
- 휴대폰 010-9922-0880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는 명예로운 순창군의회 의원으로써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 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순창군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서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하게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한다.

4.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창조적인 직무능력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한다.

5.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을 통한 공정한 의견수렴과 지역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협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하며 모든 공약 등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진다.



목 차

2011년의 성과 · 반성 2012년 의회 운영계획 안내

- 의장 인사말 6
- 순창군의회 연혁 7
- 의회기구 및 직원 정 · 현원 8
-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9
- 2011년 의정 운영 13
- 2012년 의회 운영방침 16
- 2012년 월별 의회운영 계획(예정) 20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2
- 사진으로 보는 순창풍경 25
- 의회관련 용어 26
- 순창군의 상징 28

의장 인사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6대 의회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이익과 뜻을 대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의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원 모두는 "겸양지덕(謙讓之德)"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리며,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잃지 않은 가운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한해도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의회 의장 공 숙 현

순창군의회 연혁

제 1 대 의 회

◦ 개 원 일 : 1991. 4. 15
◦ 재임기간 : 1991. 4. 15 ~ 1995. 6.30(4년 2월)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 전반기 의장 박승현, 부의장 김형무
- 후반기 의장 정상환, 부의장 김용선

제 2 대 의 회

◦ 개 원 일 : 1995. 7. 14
◦ 재임기간 : 1995. 7. 1 ~ 1998. 6. 30(3년)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 전반기 의장 김경곤, 부의장 양장희
- 후반기 의장 박종표, 부의장 김종섭

제 3 대 의 회

◦ 개 원 일 : 1998. 7. 8
◦ 재임기간 : 1998. 7. 1 ~ 2002. 6.30(4년)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 전반기 의장 김주곤, 부의장 류승규
- 후반기 의장 강대희, 부의장 한성희

제 4 대 의 회

◦ 개 원 일 : 2002. 7. 3
◦ 재임기간 : 2002. 7. 1 ~ 2006. 6.30(4년)
◦ 의 원 수 : 11명
◦ 의 장 단 : - 전반기 의장 이길영, 부의장 최필관
- 후반기 의장 양영수, 부의장 김경섭

제 5 대 의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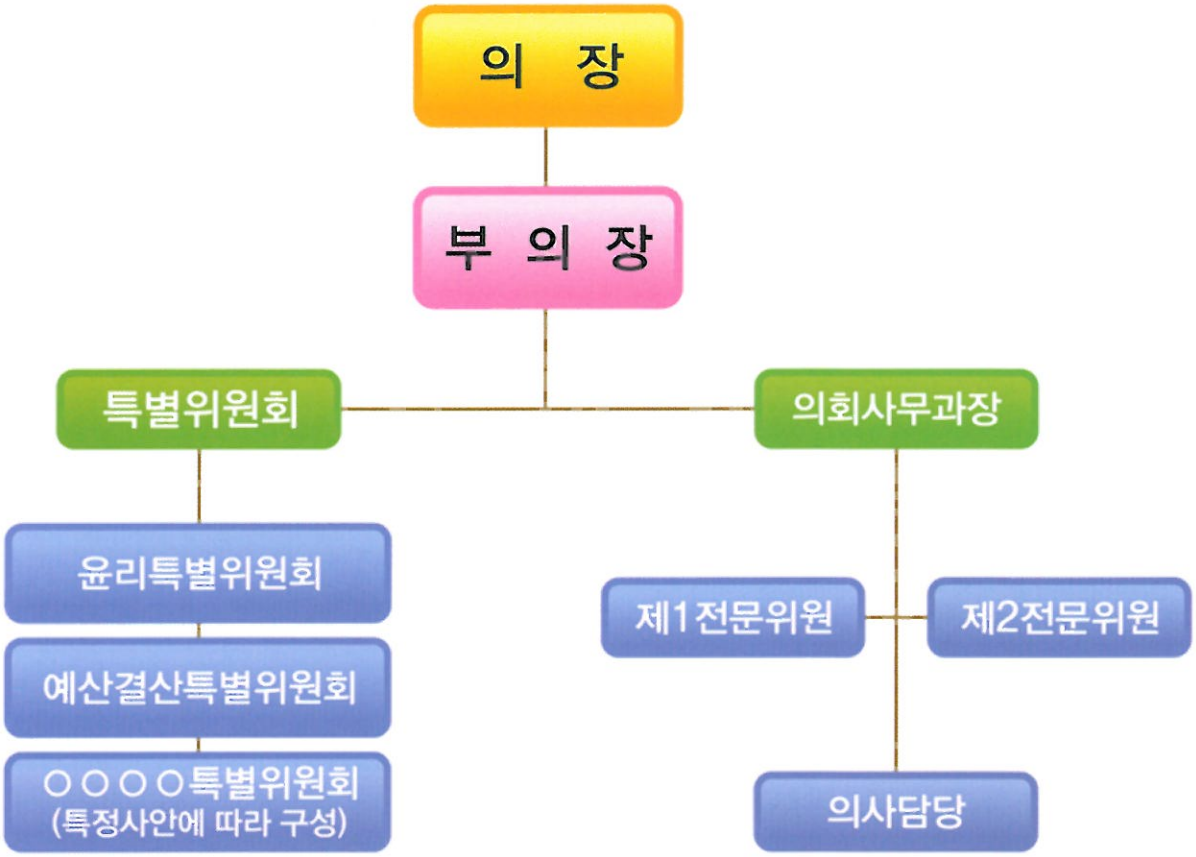
◦ 개 원 일 : 2006. 7. 4
◦ 재임기간 : 2006. 7. 1 ~ 2010. 6.30(4년)
◦ 의 원 수 : 8명
◦ 의 장 단 : - 전반기 의장 김경섭, 부의장 양승종
- 후반기 의장 양승종, 부의장 권재철

제 6 대 의 회

◦ 개 원 일 : 2010. 7. 7
◦ 재임기간 : 2010. 7. 1 ~ 2014. 6.30(4년)
◦ 의 원 수 : 8명
◦ 의 장 단 : - 전반기 의장 공수현, 부의장 정봉주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Ⅰ. 기 구 표



Ⅱ. 직원현황

구 분	계	정규직	5급 행정	6급 행정	7급 행정	8급 행정	기 능 직				청원 경찰	비고 (행정 근로)
							6급	7급	8급	9급		
현원 (정원)	15 (15)	12 (12)	3 (3)	1 (1)	2 (2)	1 (1)	1 (0)	3 (1)	1 (1)	0 (3)	1 (1)	2 (2)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Ⅰ. 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 의결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주민대표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임

■ 의결기관

- 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자치단체운영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함

■ 자치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행정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Ⅱ. 지방의회의 역할

■ 자치입법권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내용에 따라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와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로 구분
- 단, 군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조례안 처리절차

발 의	심 사	의 결	이 송	공 포
• 군 수 • 재적의원 1/5이상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 재정통제권 :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 살림규모로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 · 확정
- 결산은 군수가 예산집행 후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 제출 (군 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심사 · 의결 (본회의)

-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 정

※ 결산 승인 과정

승인요구 (군 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6월말까지 결산승인서 제출

↓

결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사 · 의결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행정통제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1/3이상의 서면발의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증언 ·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수 있음

■ 기 타

- 군정질문

  순창군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순창군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임

- 5분발언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군정 현안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2011년 의정운영

Ⅰ. 운영실적

• 회기운영(총괄) : 6회 86일(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4회 33일)

회 기 별	운 영 기 간	일수	안 건 처 리					
			계	조례안	예산 결산	결의안	동의	기타
계		86	128	75	4	22	9	18
제174회 임시회	1.12 ~ 1.17	6	5			1	1	3
제175회 임시회	3.17 ~ 3.22	6	56	51		2	1	2
제176회 임시회	5.11 ~ 5.20	10	12	2		5	2	3
제177회 제1차 정례회	7.05 ~ 7.14	10	16	8	2	3	1	2
제178회 임시회	9.19 ~ 9.29	11	12	4		5		3
제179회 제2차 정례회	11.08 ~ 12.20	43	27	10	2	6	4	5

•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 상 · 하반기 2회

• 특별위원회 운영 : 6회 52일
  – 예산결산 3회 27일, 군정실태조사 2회 16일, 행정사무감사 1회 9일

• 의원간담회 운영 : 21회(매월 5, 15, 25일)

Ⅱ. 성 과

■ 현장행정을 통한 적극적 행정 감시와 견제

- 상 ·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상반기 50건, 하반기 54건 지적 · 시정 · 개선 조치
-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원칙과 소통행정 요구
  ⇒ 시정 36건, 개선 26건, 권고 · 건의 64건 총126건
- 각종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대책수립





■ 안건심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 : 7건
- 의원발의 규칙 제 · 개정 : 1건
- 집행부 조례 제 · 개정 조례안 심사 : 68건
  ※ 책임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자명을 기재토록 회의규칙 개정

■ **정책개발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간담회 실시**

- 매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를 통한 군정 추진상황 보고 · 청취
- 도지사 · 군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군정 현안 논의
- 농림 · 축산업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농정 현안사업 토의





Ⅲ. 반 성

■ 정례회 등 회기운영시 일반군민들의 의회 방청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도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극적 홍보 필요

■ 행정사무감사 · 군정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적 · 개선사항 대비 신규사업 발굴 등 군정에 획기적인 정책개발 비율이 크게 높지 않은 점은 재원부족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구민의 생활민원 해결 노력에 비해 전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입안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보여짐

2012년 의회 운영방침

열린 의회· 알찬 의정

- 견제와 감시 등 기본역할 충실
- 발로 뛰는 현장 의정
-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
- 내실 있는 회기 운영

2012년도 의회 이렇게 운영합니다.

-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책임의정 구현
- 발로 뛰는 현장의정 구현
-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정 구현
- 의회운영 공개로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로 책임의정 구현

■ 사전적 감시 · 견제 활동

- 예산편성 단계부터 통제기능 강화
  – 경상적 예산 편성지양,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적용
- 실과단소원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후 대안제시

■ 사후적 감시 · 견제 활동

-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문제점 지적으로 적정 예산 운영 도모(연간 20일)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연1회, 11월중)

■ 군정에 대한 상시 감시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현안사업의 추진단계별 점검 : 문제점 사전 차단 및 개선 요구
- 주민의 애로 · 숙원사업 청취 : 현장조사특위 연2회 구성실시





발로 뛰는 현장의정 구현

■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열린의정 실현

- 진솔하고 투명한 의정공개 : 의정설명 및 보고회, 홈페이지 공개
- 생생하고 여과없는 민의 수렴 : 사업현장 방문, 의원간담회 등
-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 : 의정민원 상담실 운영

■ 민원발생 현장확인

- 집단민원 발생지역 현장확인 : 조사특위 구성 운영
- 군민적 숙원사업 적극적 대응 : 결의문, 건의문 채택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정 구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 연수 참여

- 국회 및 전문교육기관 입소
- 자치이론 및 예산심사 기법 등 실무능력배양

■ 선진의회 · 시설벤치마킹 실시

- 의회운영사례 및 주요시책 등 상호 정보교환

■ 의정 자문제 실시

- 집행부의 신규사업, 국가예산확보, 기업유치 등을 기획단계부터 협력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및 의회와 집행부의 생생모델 구축

의회운영 공개로 신뢰의정 구현

■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공개

- 인터넷 의정방송을 통하여 회의진행 상황 실시간 방송
- 회의 녹화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 상시 공개
- 회의장 방청 및 의회 청사 방문기회 상시 제공

■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

-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 농한기 이용 의원별 마을 순회
  - 순창군의회 운영안내 책자 : 연 1회 / 200부

■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등에 의정활동 상황 및 기획보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 연간회기 일수 : 90일

■ 정례회 운영 : 연2회

- 제1차 정례회(7월중) :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
- 제2차 정례회(11월~12월중)
  -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결산추경예산안 및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 의결

■ 임시회 운영 : 수시

-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군수의 소집요구시 수시집회
- 주요안건
  -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 답변
  - 군정주요사업현장 실태조사
  -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2012년 월별 의회운영 계획(예정)

■ 상반기

월 별	의 정 활 동 주 요 내 용	기 간 (28일)
1월	• 의원간담회 개최 •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활동 • 제180회 임시회 ┌ 2012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 청취 (1.13~ 1.18) └ 기타 일반안건 심사	6일
2월	• 의원 간담회 개최 • 읍면 마을순회 의정설명회 개최(의원별 추진) • 제181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2.14~ 2.15)	2일
3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82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3.23~ 3.27)	5일
4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의원 국내연수(국회 등 전문기관 입소) • 제183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4.13~ 4.17)	5일
5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84회 임시회 ┌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5.15 ~ 5.24)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10일
6월	• 의원간담회 개최 • 201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20일) (6.08 ~ 6.27)	

2012년 월별 의회운영 계획(예정)

■ 하반기

월 별	의 정 활 동 주 요 내 용	기 간 (62일)
7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제185회 제 1차 정례회 (7.6~ 7.13) ┌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 2011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 └ 기타 일반안건 심사	8일
8월	• 의원간담회 개최	
9월	• 의원간담회 개최 •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활동 • 제186회 임시회 (9.11~ 9.21) ┌ 2012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11일
10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선진의회 및 시설 벤치마킹 • 제187회 임시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10.24~ 10.29)	6일
11월 ~ 12월	• 의원간담회 개최 • 의원 워크샵 개최 • 제188회 제 2차 정례회 (11.12 ~ 12.18) ┌ 2013년도 예산안 ├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 2012년도 추경예산안 ├ 행정사무감사 └ 기타 일반안건	37일

※ 사정상 회기 일정과 주요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신임 군수와의 간담회 –



– 농림 · 축산업 조합장과의 간담회 –



제179차 제2차 정례회 본회의
– 한미 FTA 국회비준반대 결의문 채택 –



– 팔덕 강천산 임도 신설 구간 현장실태 조사 –



– 인계 호계마을 앞 하천 현장실태 조사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복흥 동서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현장실태 조사 –



– 농업기술센터 신축현장 현장실태 조사 –



– 유등 유촌 안여굴 농로포장공사 현장실태 조사 –



의정 연찬회
2011. 3. 28 ~ 3. 30



당진 · 괴산군 의회방문 및 산업시찰
2011. 10. 11~ 10. 1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설 명절 불우이웃 방문
2011. 01. 28



구제역 방역 근무초소 위문 방문
2011. 01. 12



LH본사 전북유치 궐기대회
2011. 04. 18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축제) 2011. 11. 04 ~ 11. 06



어린이 정치캠프
2011. 05. 20

사진으로 보는 순창풍경



– 강천산 병풍폭포 –



– 팔덕면 메타세콰이어 길 –



– 풍산면 향가 유원지 –



– 동계면 장군목 기암 괴석 –



– 강천사 –



– 강천산 현수교 –

용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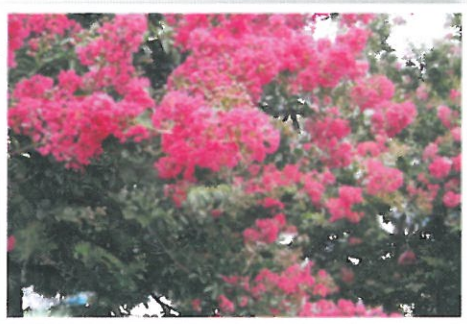
Ⅰ. 의사관련용어

용 어	해 설
집 회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 장소에 모이는 것
회 기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하는 일정
개 의	• 당일회의를 시작하는 것
유 회	• 개의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 것
산 회	•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정 회	•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 일시 중단하는 것
속 개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휴 회	• 회기중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재 개	• 본회의 휴회기간중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을 위하여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동 의	• 회의 진행이나 또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이며, 이 동의는 회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재 청	•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외에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의제가 됨
부 의	•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상 정	•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

Ⅱ. 의안관련용어

용 어	해 설
의 안	• 특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① 안을 갖추면 서면으로 제출 ② 안에 대하여 수정 가능 ③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위원회에서 제출
안 건	•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처리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안, 기타사안 포함)
발 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 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
동 의 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
수 정 안	•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
승 인 안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 또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사전에 본의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일사부재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제 안 설 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

순창군의 상징



■ 백일홍

백일동안 지지 않는 붉은 꽃의 의연한 생명력은
군민의 정신을 상징하고 지역 곳곳에 분포되어
친밀감을 주는 순창의 꽃



■ 까 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답고 정겨움이 넘치는
길조로 봉사와 협동정신,새희망을 상징하는
순창의 새



■ 느티나무

마을의 안녕과 재앙을 막아주는 토속 신앙목으로
짙푸른 녹음과 시원한 그늘로 군민의 사랑을 받으며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는 순창의 나무

■ 의회방청 안내 ■

- 순창군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군민은 누구라도 회의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나오셔서 듣고 보시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도와 성원, 격려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 방청하실 분은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여 방청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순창군의회 홈페이지 (www.sunchangcouncil.go.kr)에서 의정방송 실시간 공개됩니다.

순 창 군 의 회
www.sunchangcouncil.go.kr
595-805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의 장 실 : 063) 650-1010　　부의장실 : 063) 650-1020
사 무 과 장 : 063) 650-1030　　전문위원 : 063) 650-1040,1050
의회사무과 : 063) 650-1031,1041　F A X : 063) 652-6782